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9. 7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9년 8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14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9. 9. 7)  
상정, 심사, 수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 가. 제정이유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특성별 구분과 개설·관리 및 운영,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1) 시장의 특성별 구분(안 제4조)

- (가) 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말함
- (나)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인정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함

(2) 임시시장의 개설 등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의 폐지(안  
제11조부터 제13조, 부칙 제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임시시장의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제정조례에 포함시키고, 위 조례의 제정근거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16조제2항이 2003. 7. 30 개정시 삭제됨에 따라  
위 조례는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함

(3)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안 제14조)

시장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임

(4)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안 제20조, 제22조)

- (가)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나) 구청장은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음

(5) 시장관리자의 지정(안 제26조)

구청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안 제28조,  
제30조)

- (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할 수 있음
- (7) 과태료의 부과 · 징수(안 제35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명 금 길)

○ 동 조례안은 2006. 4. 28일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2006년 10월28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그 후 여러 번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현행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74호로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 개 요 >

동 조례안은 전문 제7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2장에서는 시장의 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정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 제3장에서는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범위, 지정 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상인회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제5장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에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칙에서는 유효기간,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 주요내용 >

- (1) 안 제4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시장의 구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인정시장의 구역을 규정함과 아울러,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2) 안 제6조에서는 주차장, 비 가리개, 화장실, 시장 안의 도로,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음
- (3)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정시장이라 함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으로 도매, 소매,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집합구역으로서 토지 면적의 합계 1천㎡이상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이상인 곳으로서 해당구역안의 상인 또는 토지나 건물 소유주의 2분의 1이상 동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음
- (4)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임시 시장의 개설 및 등록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이상인 경우 임시시장을 등록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임시시장의 등록취소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였음
- (5) 안 제14부터 제17조까지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요건, 범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6)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는 상인회 설립과 등록에 관한 기준으로 기존의 조합은 서울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상인회는 시장상인들이 전체 상인 중

2분의1이상 동의를 얻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에게 등록 토록 하였으며, 법인등록을 할 경우에도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였고, 상인회 등록에 따른 회원자격은 당해시장 내의 1점포 1인이며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인정시장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인정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징수가 가능토록 하였음

또한 상인회에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상인회의 각종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도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서 상인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7) 안 제26조에서는 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8) 안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관리,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9) 안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는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기준, 과태료 처분통지, 강제 징수 등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음
- (10) 부칙에서는 첫째, 이 조례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부칙이 산업자원부령 제371호로 2006. 10. 27 전부개정에 의해 유효기간을 설정하므로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을 명시하였고 둘째,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서 “정기시장 및 임시

시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설하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2003.7.30일 법률 제6959호로 전부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며 셋째,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인정 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며 또한 「유통 산업 발전법」, 「민법」 등 다른 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이미 상인회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도 상인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음

#### [검토의견]

유통시장 개방이후 나날이 팽창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등장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경영개선,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 시설현대화를 촉진시키고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서 개점휴업상태의 재래시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 산업발전법」 및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 등 관련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